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

2023. 9.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요약

가. 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시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관이 국민과 소통하여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
- 제도의 도입 취지상 변론과정에서의 충실한 심리뿐만 아니라 판결서에도 당사자에 대한 답변기능이 강화될 것이 요구되는바, 그 결과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판결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답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재판제도의 변화

- 전자소송의 본격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등 재판제도가 변화하였음에도 판결서 작성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가 전통적인 재판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1)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 방안

■ 연구 범위의 집중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소액 판결서 작성 방식의 다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고, 소액판결서에 이유기재를 권고하는 취지로 소액



사건심판법이 개정되어 이유기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민사 판결서 중 제1심 소액판결서로 연구범위를 집중하고자 함

■ 체크식 판결서의 도입 제안

- 소액사건은 금전지급청구로 정형화되어 정식 민사판결서와 같은 수준의 이유 기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이유를 미리 열거·기재해두고 해당 이유를 체크하는 방식(이하 ‘체크식 판결서’)을 제안함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관 과반이 판결서에서 ■와 같이 체크하는 방식이 이유 기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변호사 과반이 체크식 판결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음

■ 체크식 판결서 도입의 구체적 내용

- 사건유형을 불문하고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제공하되(단일형) 체크박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조식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식(일반형)과 체크박스를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방식(세분화형)으로 제공(각 예시는 첨부 참조)
- 체크식 판결서 양식 도입방법의 경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인한 소스프리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조치를 나누어 제안함(참석 위원 전원 찬성¹⁾)
 - 단기적 조치 : 체크식 판결서의 기본 양식(일반형, 세분화형 모두)을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 중 ‘간결화 기재례’에 한글파일로 등록하여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장기적 조치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이후 자동생성 프로그램²⁾ 내지 별도의 체크식 이유 기재 프로그램³⁾ 등의 도입 검토

1) 총 위원수 11명 중 2023. 8. 21. 회의 참석자 10명 전원 찬성

2) 판결서 작성관리 시스템에 ‘체크식 이유 생성’ 버튼을 만들어 사건 생성시 위 버튼을 클릭하여 이유란 기재에 예시 유형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방식



2) 소송서류의 전자정보 제출요구 근거 규정 도입

■ 도입의 필요성

- 다수당사자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원자료가 담긴 전자파일을 제공받지 못하면, 실체 해결을 위한 논증 작업보다는 수치 입력 등 기계적 업무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존재함. 판결서 작업 업무의 적정화·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전자파일 등에 대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정안 제안

-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2로 관련규정 신설을 제안함(참석 위원 전원 찬성)

다.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1)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방식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따른 규범적, 현실적 근거

-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재판부의 심증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더욱 확고해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4) 문언의 반대해석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재판부의 심증이 일치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것으로 이유 제시가 가능함
-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원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3. 4.

3) 양형기준시스템과 같은 형식의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

4)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7. 선고 2020도6363 판결)

▣ 법관들의 공감대 형성

-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90%)가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이유 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함
- 임의적 기재사항(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 정한 사항 외의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응답자 다수(65%)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도 응답자 다수(55%)가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으나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답변(39%)도 유의미한 결과를 형성하였음

2)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 개선방안

- 다수의 법관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의 형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기재 외에 추가적으로 문장식의 양형 이유를 기재하고 있음
-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72%)가 양형의 이유 부분에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권고형만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이유를 부가하여 기재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변함
- 응답자 다수(67%)는 위 방식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기본형(선고형의 결정에 일반양형인자를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답변함

3)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2014-1)」 개정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이유 기재방식에 대한 내용 반영

-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덧붙여 기재하는 것으로 반영하고자 함

■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에 대한 내용 반영**

-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기재하고, 선고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그 이유를 부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분과위원회 진행 개요

가. 회의 경과

1) 제3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2. 12. 12.(월) 15:00 (화상회의)**

■ **안건 회부**

-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이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됨

2) 제3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2. 13.(월) 15:00 (화상회의)**

■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발제**

- 소액 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체크식 판결서, 목차 생성형 판결서 도입 논의
- 체크식 판결서를 구현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필요성 논의

■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발제**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의 개정 필요성 논의
-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작성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 논의

3) 제3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3. 27.(월) 15:00 (화상회의)

■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소액사건심판법」이 2023. 3. 28.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액 판결서 작성방식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연구·검토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파일제출요구의 근거 규정 도입 논의

■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의 적정한 기재방식 및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방식을 검토하기로 함
- 향후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반영할 것을 논의

4) 제3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5. 1.(월) 15:00 (화상회의)

■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체크식 판결서의 유형과 그 구체적 제공방식 논의
- 재판부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담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논의

■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의 적정한 기재,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



재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공유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 방식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내부 추가 의견조회 예정

5) 제35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6. 19.(월) 15:00 (화상회의)

■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신설 논의
- 체크식 판결서 도입 관련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조치 논의

■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규범적, 현실적 근거 논의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개정안 논의

6) 제3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8. 21.(월) 16:00 (대면회의)

■ 세부 쟁점에 대한 토의 및 의결

나.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의 적정한 기재,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설문조사 기간, 대상자 및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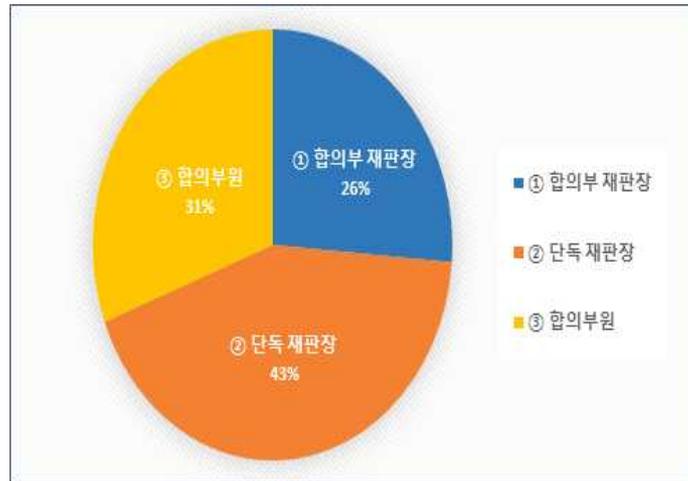
- 설문조사 기간: 2023. 4. 17.(월) ~ 4. 21.(금)
- 설문조사 대상자: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처장·차장을 제외한 전국 법관(2023. 4. 1. 기준, 총 3,078명)



● 응답자 수: 총 490명(15.9%)

● 설문조사 응답자 정보

- 직책: 합의부 재판장 128명(26%), 단독 재판장 209명(43%), 합의부원 150명(30%)



- 국민참여재판 사건 참여 경험: 231명(48%)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음

- 국민참여재판 사건 참여 근무지: 서울 본원(100명, 37.8%), 수도권 본원(56명, 21.1%), 지방 본원(109명, 41.1%)으로 고르게 분포함





3. 논의 배경

가.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취지⁵⁾

- 법조일원화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나 일정한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
- 위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됨

▣ 재판에 대한 기대 변화

- 국민들로서는 기존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되는 법관들보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됨

▣ 판결서에 대한 요구 변화

-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및 제고라는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판결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판결서의 기능 중 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이 강하게 요청됨

나. 재판제도의 변화

- 전자소송의 본격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등 재판제도가 변화하였음에도 판결서 작성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5)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http://judges.scourt.go.kr/appjudge/intro/Unification.work> (2023. 8. 9. 최종 확인)



다. 판결서 적정화의 필요성

▣ 재판과 판결서에 대한 요구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 국민들로서는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더욱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기대하게 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라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비추어 판결서의 답변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는 결국 심리와 판결서 작성에 대한 법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판결서 적정화의 필요성

-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판결서의 답변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작성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판결서 작성에 들어가는 업무부담은 경감시켜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더욱이 최근 재판 지연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서 적정화가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정승연)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데(2023. 2. 최종검토 완료), 위 보고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판결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고자 함

4. 민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가. 연구 범위의 집중

1) 소액판결서의 적정화

- 당초 안건으로 회부된 민사판결서 적정화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소액은 물론 단독, 합의사건과 같은 1심 판결서 및 항소심 판결서



전체가 대상이 됨. 동일한 민사판결서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나 복잡성, 이유 기재에 관한 규정내용 등이 달라 연구범위가 광범위함

- 안건 회부 이후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유 기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소액판결서 작성 방식의 다변화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필요성도 있음
- 소액사건은 금전지급청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민사판결서에 비하여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아 변화된 판결서 작성 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민사판결서 중 제1심 소액판결서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소액판결서의 적정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른 민사판결서로의 확장,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전자정보 제출요구 근거조항 도입

- 재판업무 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담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 특히 다수당사자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원자료가 담긴 전자파일을 제공받지 못하면 실체 해결을 위한 논증 작업보다는 수치 입력 등 기계적 업무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판결서 작성 업무의 적정화·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전자파일 등에 대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내용은 판결서 자체의 적정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민사판결서 작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사판결서 적정화 제안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나. 소액판결서 적정화에 대한 논의

1)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

-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일정한 경우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 3. 28. 공포되어 시행됨(이하 ‘개정법’ 이라 함)

개정 전 [법률 제6630호, 2002. 1. 26.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6)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u>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u> 2. <u>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u> 3. <u>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u>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

■ 설문조사 결과

- 법관 상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56.6%)이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구상금, 시효연장, 영조물 하자 책임, 약정금 등의 일정 유형의 경우 소장 접수 단계부터 요건사실별로 항목을 체크하는 양식의 소장을 받고 판결서에서 ■와 같이 체크하는 방식이 이유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답변함
- 변호사 상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56.3%)이 일정 유형(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구상금, 시효연장, 영조물 하자 책임 등)의 소액사건에서 체크식 소장·판결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함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6)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일정 유형 사건(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시효연장, 어음금, 수표금, 물품대금, 금융기관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에게 요건사실, 관련 증거에 관한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는 소장 양식(체크식 소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이 쉽게 보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찬성 8인 / 반대 3인)
- 체크식 소장이 접수된 소액사건에서 법관이 체크식 이유가 첨부된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립하였음(찬성 5인 / 반대 5인)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과

-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2022. 6. 8.)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을 도출함

-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행정처가 소액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함

3) 이유 기재 방식 개선방안 : 체크식 판결서의 도입

■ 제안 배경

- 앞서 논의배경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판결서 적정화는 판결서의 답변기능은 강화하면서도 법관의 판결서 작성 업무 부담은 경감시키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소액사건과 관련한 전형적인 이유들을 미리 열거하여 기재하여 두



고 해당 이유를 체크하는 방식(그 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도록 유도), 이른바 체크식 판결서를 제안함

- 이유가 체크식으로 기재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서 주문과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당사자로서도 이를 근거로 불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론 사안에 따라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간과하기 어렵고 법관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의 수도 적지 않아, 모든 소액사건에 판결 이유를 문장형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되고 신속 재판의 이상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법관 및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이 일정 유형의 소액사건에서 체크식 판결서 도입에 찬성한 바 있음⁷⁾
- 지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체크식 소장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적정한 요건사실 기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각 사건의 요건사실에 따라 소장 양식을 구성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회부된 안건이 판결서의 적정화이므로 소장은 포함된다고 보기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 체크식 판결서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분과위원회 내부 의견조회결

7)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체크식 소장을 전제로 체크식 판결서를 도입하는 것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논의에서 체크식 소장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이에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체크식 소장을 전제하지 않은 체크식 판결서 도입과 관련하여 다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의견조회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찬성 1명, 반대 4명, 기타 1명)이 추가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과

- 사건 유형을 불문하고 하나의 통일된 양식을 구성하는 방법(단일형),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요건사실에 맞는 별도의 양식을 구성하는 방법(개별사건형)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단일형 3명, 개별사건형 1명, 기타 2명으로 답변함
- [단일형을 선택한 경우] 체크박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조식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식(일반형)과 체크박스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방식(세분화형)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일반형 1명, 세분화형 3명으로 답변함

일반형 예시	세분화형 예시
<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input type="checkbox"/> 제소기간 초과 <input type="checkbox"/> 면책결정의 확정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기간 경과 임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소송신탁(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기판력에 반함 <input type="checkbox"/> 제한되는 일부 청구(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2)

- 사건 유형을 불문하고 단일한 유형을 제공하되, 체크박스를 세분화하는 방식에 다수가 찬성

4) 제공방식과 관련한 현 상황의 문제점

- 체크식 판결서의 제공방식으로는 ①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 중 ‘간결화 기재례’에 예시 유형을 제공하는 방식, ② 판결서 작성관리 시스템에 ‘체크식 이유 생성’ 버튼을 만들어 사건 생성시 위 버튼을 클릭하면 이유란 기재에 예시 유형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방식, ③ 양형기



준시스템과 같은 형식(프로그램 실행시 체크박스가 뜨고 이를 클릭한 후 붙여넣기 하면 체크된 이유가 판결에 첨부되는 형식)의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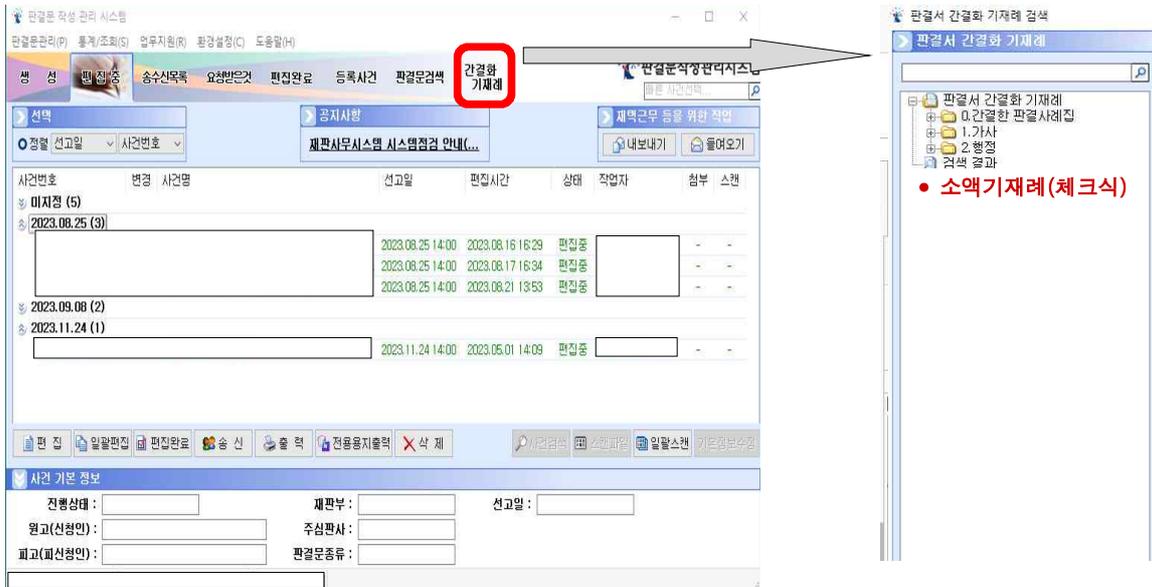
- 체크식 판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체크식 판결서 양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하여 전산정보국에서는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오픈 시(2024년 예정)까지 현재 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최소화(이른바, 소스프리징) 할 예정임을 공지한 바 있음
- 한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의 판결문작성관리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체크식 판결서 도입과 관련하여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조치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에 출석 위원 전원(총 11명 중 10명 출석)이 찬성함

5) 구체적 방안

■ 단기적 조치 : ‘간결화 기재례’에 일반형/세분화형을 한글 파일의 형태로 제공

- 체크식 판결서의 기본 양식을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 중 ‘간결화 기재례’에 한글파일로 등록하여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이유에 붙여 넣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한글파일 형태로 기재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세분화형을 모두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구체적인 형식은 첨부된 자료 참조, 추후 내용은 변경가능) 작성자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 또는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파일 업로드 방식이므로 수정 내지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물론 시스템을 통한 자동생성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사용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법원행정처에 도입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소스프리징 실시 중이기는 하나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이 도출되면 충분히 단기적인 시스템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

▣ 장기적 조치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이후 자동생성 프로그램 내지 별도의 체크식 이유 기재 프로그램 등의 도입 검토

- 자동생성방식보다는 별도의 체크식 이유 기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다양한 이유를 담아내면서도 작성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 다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시까지 시스템 개선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판결서작성관리 시스템 역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경된 시스템 상에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재례 제공 방식’ 외 다른 방안은 장기적인 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다. 당사자 등에 대한 소송서류의 전자정보 제출요구 근거조항 도입에 관한 논의

1) 제안 배경

- 재판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원본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그 도입을 논의함
 - 판결서,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등 재판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가 제출한 서면의 원본파일이 필요한 자주 있음
 - 전자소송의 경우 원본파일이 한글파일이라면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PDF 또는 MS word 형식의 파일이라면 이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고, 종이소송의 경우 당사자만이 원본파일을 소지하고 있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실무상 변론 과정에서 또는 변론 외 방법으로 원본파일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그 근거에 대한 규정 없이 당사자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외국 입법례

- 일본 민사소송규칙에는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기재한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에 관한 규정이 2003년 신설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신청 등의 방식)

제2조(당사자가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

제3조(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팩시밀리에 의한 제출)

제3조의2(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 기재한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① 법원은 판결서의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 그 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람 또는 제출하려는 자가 당해 서면에 기재한 정보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갖고 있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 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써 법원이 정한 것에 의해 법원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최고 및 통지)

제5조(소송서류의 기재방법)

3) 현행 민사소송규칙의 내용

- 신설하려는 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중 통칙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함
- 현행 민사소송규칙 중 통칙 부분은 아래와 같음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조(최고·통지)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mm×세로 297mm)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mm×세로 4.2mm)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 일본 민사소송규칙에서의 해당 조항의 위치

- 일본 민사소송규칙은 서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2조에서 기재사항을, 제5조에서 기재방법을 각 규정하고, 서면의 제출방법과 관련하여 제3조에서 팩시밀리에 의한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 서면에 기재된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경우 서면의 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서면의 제출방법에 관한 제3조의 후속규정인 제3조의2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 검토

- 우리 민사소송규칙의 경우 별도로 서면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제출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정보 요구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서류의 접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칙의 마지막 규정, 즉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후속 규정으로 제5조의2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5) 조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3조의2 제1항

-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로 규정하고 ‘전자적 기록’을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별도로 정의함
- 또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 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미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이용하여 제공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제출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의 예처럼 제출방법을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제출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6) 구체적인 개정안

- 민사소송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제5조의2로 추가하는 것에 의원 출석 위원 전원 찬성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기재된 정보의 제공) <u>법원은 판결서 작성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서면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기록한 전자문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u>

8)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제출요구는 재판장이 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장뿐만 아니라 수명법관도 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가. 논의의 필요성

1)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의 개정 필요성

- 형사 법관이 판결서 이유를 작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공판에서의 심증 형성과 설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가 2014. 8. 1. 시행되었음
- 위 예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현행 법률 내용과 실무관행 변화를 고려하여 예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의 적정화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작성방식은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각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최근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서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작성방식에 관하여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이유 기재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3)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 개선 필요성

-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는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양형 기준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양형의 이유 기재 방법은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확실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양형사유 적시를 지양해야 함
- 양형기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간략한 양형이유(권고형량 범위 및 특별양형인자)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고 있고,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을 기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 형사 판결서 중 상당수는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면서 양형인자를 기재하였음에도 또다시 문장식으로 장황하고 중복적으로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에 관하여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이유 기재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나.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의 적정화 논의

1)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 관련 법령 및 예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 국민참여재판법)

제48조(판결선고기일)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



다.

-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7조(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

-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따른 규범적 근거

▣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배심제를 바탕으로 참심제 요소를 혼합하고 있음

- 배심원들의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이 참여하는지, 혹은 배심원들이 법관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평의 및 평결에 임하는지에 따라 참심제와 배심제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참심제 국가에서는 직업법관 1명이 직업법관 및 참심원단을 대표하여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판결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배심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의 제시 여부 및 그 방식이 제각각임
-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리는 미국식 배심제를 바탕으로 형량을 법관에게 제시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혼합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직업법관과 분리되어 비공개된 평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된 평결’ 인지, 아니면 ‘직업법관과 배심원의 합의체에서 나오는 통일적인 결론’ 인지에 대해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유 제시의 가능성과 방식에 관한 정합적 논의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법 국가들의 배심제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의 형사 배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의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할 뿐이고, 배심원들은 평결에 대하여 이유를 덧붙일 것이 요구되지 않음. 그 이유는 배심원들의 평결은 공동체의 양심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내재적인 정당성(inherent legitimacy)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됨
 - 보통법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배심제도에서는 배심의 평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배심원 평의 비공개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고, 위 원칙은 배심원들이 평결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형사 판결서 이유 제시의 정도는 재판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형사 판결에서 이유를 제시받는 것은 피고인이 당면할 수 있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개개인을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숙고하였다는 점을 이해시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의 이유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며, 법관이 객관적인 논증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그 본질적 구조상 배심원들의 평결이 배심원들과 독립하여 형성된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고, 재판부의 심증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정당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임⁹⁾
 -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함에

9) 사법연수원, 2023년도 형사재판실무연수 I “국민참여재판의 진행기법” 43쪽



있어서는 판결서의 이유 기재방식에만 국한하여 제도를 관찰하여서는 안 되고, 절차 전체의 맥락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와 항소의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나라와 달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는 법관에 의한 법률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배심원들의 유죄 또는 무죄 평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미리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아 공소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가 진행된 구두변론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음. 또한 배심원들은 재판장에게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국민참여재판법 제41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왜 유죄로 판단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재판부의 심증이 일치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것으로 이유 제시가 가능함**
-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법안을 성안할 당시에는 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배심원과 법관의 평결이 다를 경우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양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판결 이유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제안에 따라 위 조항이



포함되었음

- 그러나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의 이유 작성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침묵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의 도입 경위를 고려할 때, 문언의 반대해석으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같은 결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현행 법률상 형사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구성요건은 제외),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의 양형의 이유가 있을 뿐임
-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재판부의 심증이 일치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원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
-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음
 -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은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등 참조)
 - 인천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합180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1. 공소사실의 요지

(내용 생략)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어 준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준강간미수는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로 보아야 한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2명
- 무죄: 5명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시와 함께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1837 판결)
- 대법원은 최근 원심의 판단에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363 판결).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원용하면서 이유를 기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



3)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따른 현실적 근거

- 국민참여재판법 제48조 제1항, 제3항은 판결의 선고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조항이 비교적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단지 평의와 평결에만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 결과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판결서 초안을 완성한 후에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임
-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절차상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특히 평의와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4호),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무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 선고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이하게’ 라는 이념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의 과정은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은 길고 자세한 판결의 이유가 아니라 선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결론에 의해 얻을 수 있음. 이에 법관의 업무에 있어서도 상세한 판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소송관계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고, 위 논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에서 더욱 실현될 필요성이 높음
-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기록을 보지 못한 채 배심원들과 함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이루어



지는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게 됨.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추론 과정이나 인정 사실들을 상세하게 정리,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4)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방식 및 판결서 이유 기재 정도 현황

- 응답자 다수(92%)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모두 선고한다고 답변함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중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응답자 다수(53%)가 일반 형사 판결서보다 간략히 기재한 후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답변하였음¹⁰⁾
- 소송관계인의 사실상 주장에 해당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응답자 다수(46%)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배심원의 평결결과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18%)도 필수적 기재사항보다 유의미하게 있었음¹¹⁾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응답자 다수(87%)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관의 이유 제시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 다수(90%)가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이유 제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함

10) ① 일반 형사 판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38%), ② 일반 형사 판결서보다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53%), ③ 배심원의 평결 결과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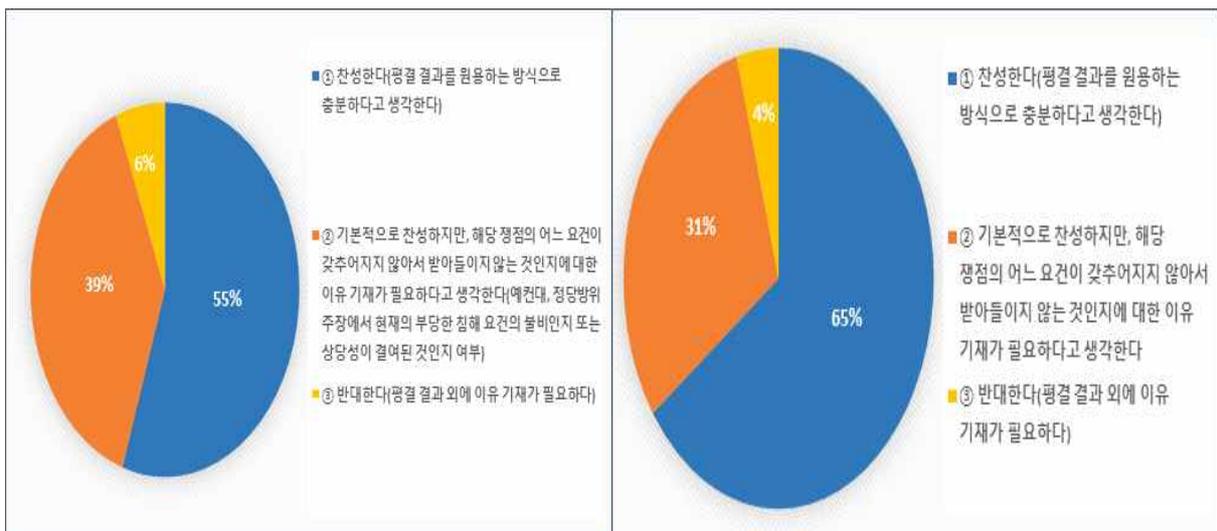
11) ① 일반 형사 판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31%), ② 일반 형사 판결서보다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46%), ③ 배심원의 평결 결과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경험이 있다.(18%), ④ 이유 기재 의무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았다.(5%)



-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규정된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주된 이유로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찬성하였고, 해당 쟁점의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기재(예컨대, 정당방위 주장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이 불비인지 또는 상당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39%에 달함
- 응답자 다수(65%)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할 경우 소송관계인의 사실상 주장에 관한 판단인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주된 이유로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찬성하였고, 해당 쟁점의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감소함

[필수적 기재사항]

[소송관계인의 사실상 주장]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



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① 임의적 기재사항(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 정한 사항 외의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②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함

- 임의적 기재사항(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 정한 사항 외의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이유 기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참고: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찬성(65%), 부분적 찬성(31%,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함)]

- 찬성(10명), 반대(0명), 기타(0명)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의적 기재사항보다는 판결 이유를 더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참고: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55%,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39%]

- 찬성(10명), 반대(0명), 기타(0명)

- 보충설명

	답변
1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되, 판단에 대한 논거 중 대표적인 것만 간략히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정도에 대한 이유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6) 향후 입법론적으로 검토 및 보완할 사항¹²⁾

12)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재판 판결서보다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 주



-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충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에 실질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 내·외부로부터 판결에 대한 의미 있는 비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사법 판단에 대한 견제가 약화됨.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공판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결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를 제공받지 않으면 좌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심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판장의 모두설명(국민참여재판법 제42조 제2항) 또는 최종설명(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하고, 성 고정관념 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배심원들의 다수의견 또는 만장일치의 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면서 배심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충실히 견지한 상태에서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증거 판단과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20노1517 판결)
- 향후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나면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유무죄, 형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는 질문지를 교부하여 이에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관이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그 답변을

된 근거로는 ①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은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일반 형사판결의 이유 기재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에 대한 이유를 간이화하거나 생략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인 판단 주체인 법관이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이유를 생략하는 것은 이유불비에 해당함을 제시하고 있음[홍진영,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사법발전재단 통권 58호(2021) 411-453 참조].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배심원단이 복수의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지를 활용할 경우 평의에서 집중하여야 할 논점이 추려질 수 있고, 배심원단에게 평결에 이르는 논리적인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음

다.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 개선방안

1)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 관련 법령 및 예규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8조(양형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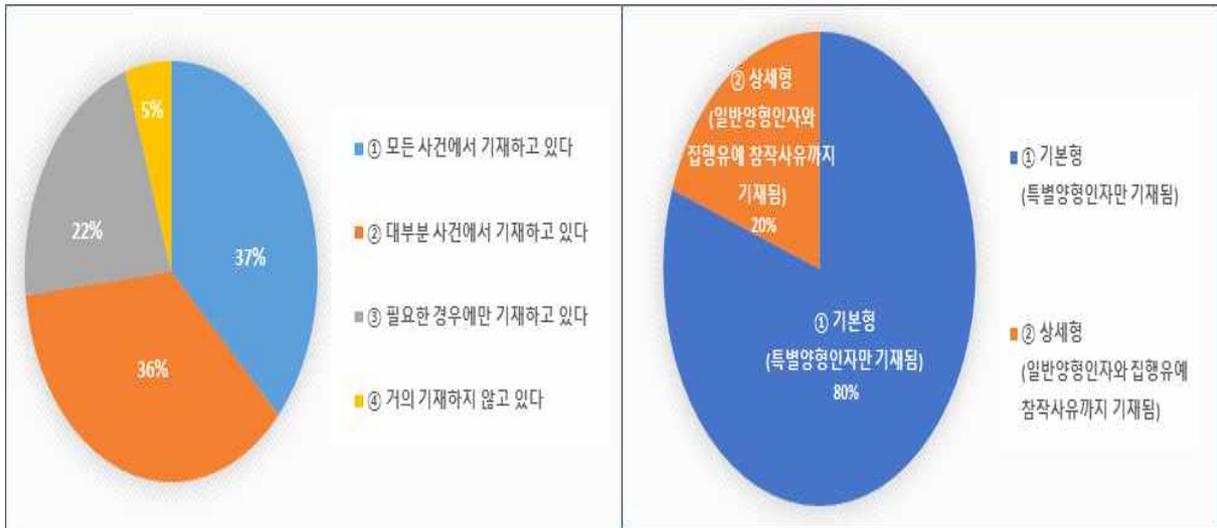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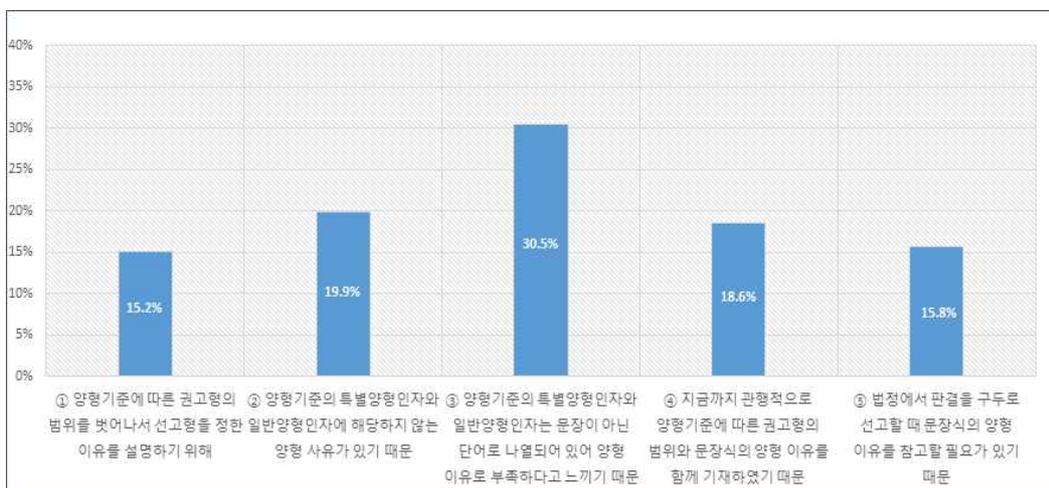
■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 현황



- 응답자 다수(73%)는 대부분 사건에서 형사 판결서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고 있고, 응답자 다수(80%)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는 경우 기본형(특별양형인자만 기재됨)으로 기재한다고 답변함



- 응답자 다수(73%)는 대부분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문장식의 양형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이유 중 다수(30.5%)는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문장이 아닌 단어로 나열되어 있어 양형 이유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양형인자를 기재하였음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문장식의 양형 이유로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양형인자와 문장식의 양형 이유가 서로 중복되거나 간혹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함. 이는 판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형사 판결서 양형의 이유 기재 개선방안

- 응답자 다수(72%)가 양형의 이유 부분에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권고형만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이유를 부가하여 기재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변함
- 응답자 다수(67%)는 위 방식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아래의 두 가지 유형 중 기본형(1안, 선고형의 결정에 일반양형인자를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변함

[1안] 기본형(선고형의 결정에 일반양형인자를 자동 반영하는 방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준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나. 제2범죄(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 다. 제3범죄(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 불리한 정상(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제1범죄, 제2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 없음

[2안] 상세형(선고형의 결정에는 추가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방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개정 내용

1) 현행 법률 내용에 부합하게 내용 수정

- 예규 제6조의 (예시1)로 제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현재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적용되는 형



법의 특수재물손괴죄 해당법조로 수정할 필요성 있음

현행	개정안
<p>제6조(법령의 적용) ①·②·③ (생략) (예시1)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며 폭처법 적용의 배제를 주장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죄, 이하 생략)</p> </div> <p>(예시2) (생략)</p>	<p>제6조(법령의 적용) ①·②·③ (현행과 같음) (예시1)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며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의 배제를 주장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죄, 이하 현행과 같음)</p> </div> <p>(예시2) (현행과 같음)</p>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이유 기재방식에 대한 내용 반영

- 임의적 기재사항(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 정한 사항 외의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이유 기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찬성(65%), 부분적 찬성(31%,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함)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②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대상 의견조회 결과 10명 모두 찬성한 점을 감안하여,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해도 되는 것으로 반영하고자 함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①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55%, 어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39%로, 임의적 기재사항과 같이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만 기재하고 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②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대상 의견조회 결과 임의적 기재사항보다는 판결 이유를 더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모두 찬성한 점을 감안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덧붙여 기재하는 것으로 반영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p> <p>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p> <p>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p> <p>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p>	<p>제7조(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p> <p>①·② (현행과 같음)</p>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조의2(국민참여재판에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의 특례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기재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에



	<u>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기재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u>
--	---

3)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에 대한 내용 반영

- 전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만을 기재하고, 선고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 그 이유를 부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기준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로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고, 법관이 기존의 문장식 양형 이유를 선택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양형의 이유) ①·② (생략)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8조(양형의 이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만을 기재하고,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선고하는 경우에만 그 이유를 부가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u>



첨부

일반형 예시¹⁶⁾

이 유

1. 원고 청구 채권

(예: 0000. 00. 00.자 0000원 대여금 채권/ 별지 기재와 같다¹³⁾)

2. 피고의 주장

- 부인(예: 자력 없음)
- 항변(예: 소멸시효완성 및 변제)

3. 판단

이 사건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¹⁴⁾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송종료선언(예: 소취하, 조정성립)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예: 제소기간 도과)
- 원고 주장 채권은 전부 존재함
: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¹⁵⁾
 - 법리상 배척(예: 자력이 없다는 주장은 단순 부인에 불과함)
 - 변제항변 배척(예: 을1호증만으로는 변제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상계항변 배척(예: 을2호증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성립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증거부족으로 인한 배척(예: 을3호증만으로 피고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
- 원고 주장 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아니함
 - 법리상 전부/일부 배척(예: 대여금 중 200만 원은 피고의 아버지



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아버지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들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변제항변 전부/일부 인정(예: 을1호증에 의하면 2023. 5. 1. 300만 원 변제사실 인정되나 을2호증만으로 위 300만 원 외 추가 100만 원의 변제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상계항변 전부/일부 인정(① 자동채권의 내용: 추가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상계적상: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22. 1. 25.자 준비서면 도달일인 2022. 1. 17., ③ 소멸범위: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8. 8. 15.부터 2021. 6. 4.까지의 지연손해금 575,098원)
- 증거부족으로 전부/일부 배척(예: 갑1호증만으로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여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그 외(예: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받아들임)

13) 별지 형식으로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14)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제정 1998. 8. 20, 재판예규 제625-1호) 제9조 제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증거에 의하면’이라고 기재하거나, 증거의 거시를 일체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 설시 방법이 허용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설시가능하므로 개별 증거 설시 불필요

15)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크게 법리상 배척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로 포섭될 수 있으나, 개정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계와 변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함.

16) 이하 괄호안 부분은 예시로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제공될 양식에서는 괄호만 기재됨.



세분화형 예시

이 유

1. 원고 청구 채권

(예: 0000. 00. 00.자 0000원 대여금 채권/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

- 부인()
- 항변
 - 무효¹⁷⁾
 - 취소
 - 계약 해제 내지 해지
 - 변제
 - 상계 내지 공제
 - 동시이행
 - 그 외:

3. 판단

이 사건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송종료선언
 -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 조정 성립
 -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 그 외: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채권자대위 소송의 경우
(피보전권리 부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보전의 필요성 없음, 채무자의 권리 행사)



-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지 않음
 -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
 - 회생채권자표 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 재소금지규정 위반(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중복제소금지규정 위반(민사소송법 제259조)
 -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동일한 소제기
 - 소송신탁(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 소액사건심판법상 제한되는 일부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부제소 합의 내지 소취하 계약 존재
 -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음(민사소송법 제251조)
 - 그 외 :
-
- 원고 주장 채권은 전부 존재함
 - :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 법리상 배척
 - 변제항변 배척
 - 상계항변 배척
 - 증거부족으로 인한 배척
 - 그 외:
-
- 원고 주장 채권은 전부 / 일부 존재하지 아니함
 - 법리상 전부/일부 배척
 - 피고의 변제항변 전부/일부 인용
 - 피고의 상계항변 전부/일부 인용
 - 증거부족으로 전부/일부 배척
 - 그 외:

17) 각 무효사유나 취소사유를 구체화할 수도 있음(무효사유 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